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 명확화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59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 명확화	2

I. 제안경위

2025년 7월 21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Ⅲ. 검토의견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및 제45조제5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u>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화학물질 사용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교체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말한다.</u>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현행법령에서는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¹⁾과,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등의 ‘살생물제’²⁾에 관한 안전관리 규제와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가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³⁾의 경우 제조·수입 전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또는 승인⁴⁾ 후 시장에 유통할 수 있으며,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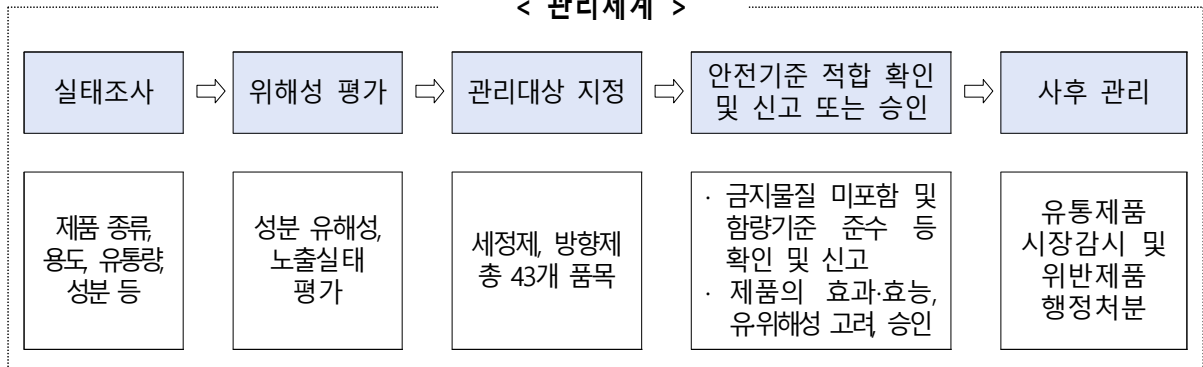
: 세정제품, 세탁제품, 코팅제품, 접착·접합제품, 방향·탈취제품, 염색·도색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미용제품, 여가용품 관리제품, 살균제품 등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

< 관리체계 >



‘살생물제’의 경우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시장 출시 전 안전성·효과가 검증·승인⁵⁾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음.

< 관리체계 >

□ 살생물물질(승인) ⇒ 제품(승인) ⇒ 처리제품(안전·표시기준 준수)

구분		내용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제조·수입자	· 안전성·효과 입증자료를 구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승인 신청
	기후에너지 환경부	· 안전성·효과 자료 평가 → 안전성·효과 검증된 물질, 제품 승인

이렇듯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법 제45조⁶⁾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범위는 주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사항을 보다 원활히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생산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 내 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한 제품으로서 원료 전성분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제품 내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시민사회의 심사⁷⁾를 거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초록누리에 공개·홍보하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확인마크]

* 지붕 모양은 ‘보호’ +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손의 형상은 ‘소비자 안전’ + 소비자와 기업의 다짐인 ‘더 안전한 선택’을 표현



심사대상 품목은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자동차용워셔액, 살균제 등 총 35개⁹⁾이며, 2025년 10월 현재 20개 기업, 129개 제품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기업 및 제품으로 선정되었음.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제품 내 원료 전 성분별 유해성 수준 확인(서류) → 안전관리 노력 등 제조 공정 평가(현장) → 심사위원회* 적합 여부 판단(종합)

* 기업·시민사회·정부 추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서류·현장심사시 기술위원회 운영)

8) 2025년 기준 예산은 2억 5,000만원(화학제품 안전관리-화학제품안전법제도이행지원-화학제품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이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심사와 선정된 제품의 사후관리 및 홍보에 사용되고 있음.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실적]

연도	기업 수		화우품 수	
	당해 선정	누적	당해 선정	누적
2025. 10월	3	20	29	129
2024	6	17	41	100
2023	6	11	16	59
2022	6	9	18	43
2021	8	8	25	25

※ 전체 생활화학제품 수 205,052개 / 기업 수 16,961개('24년)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품안전 관리강화 유도 및 안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추가적으로, 개정안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4호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화학물질 사용량을 현저히 줄이거나”의 경우, 농축형 제품은 화학물질 사용량은 줄어드나 유·위해성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특수목적코팅제/녹방지제/다림질보조제/윤활제/마감제/경화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접합제/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염색제/물체도색제
자동차전용제품	자동차용워셔액/자동차용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잉크·토너/인주/수정액및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접착제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세정광택제
살균제품	살균제/살조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보존제/필터형보존처리제품
기타	초/습기제거제/인공눈스프레이/공연용포그액

9)

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교체한”의 경우 대체물질 자체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이라는 문구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개정안 제3조제14호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 -----,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u>화학물질 사용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교체한</u>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제품</u> 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u>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u>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선정기준에 적합한 제품</u> 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우수제품을 고시로 정할 경우, 행정예고 등 개정 절차로 인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이나 취소가 고시에 즉각 반영되기 어려워 제도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선정 제품의 직접 고시보다는 선정기준을 고시로 구체화하는 것¹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0)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시 공개방법 등을 규정

문 의 처
02)6788-5536